

시 방 서

잠실스포츠상가 조명설치 및 광고물
제작,이전 공사

제일광고 (201-29-00768)

서울 중구 오장동 173

한종우

2017 12.

1. 공사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① 본 시방서는 잠실종합운동장내 스포츠상가의 조명등의 설치 및 이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 ①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 ③ 담당원은 공사 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 ①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 ②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설치자 자격

본 간판설치공사를 제작 설치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광고업 신고를 필한 업체

6)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7일

1-2 공사 현장 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 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 ①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 ②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 ③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 ① 기존부분.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 ②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 제작 설치 특기사항

2-1 led 210W 조명, led 3구 모듈작업, 간판이전, 기둥구조물 간판 제작.

2-2 알미늄 후탱 2400*550 1식

포맥스 2400*1200 1장

후랙스 실사 2400*550 1장

SMPS 2200*300W, 2200*200W

3구 모듈 0.7W 800개

LED 형광등 10조

투광기 210W 2개

전기계량기 5K 1개

전선 2.5@ 150m

2-3 상기품목으로 조명 및 광고물을 만들어 견고히 부착한다.

2-4 모든 자재는 검사용품을 사용하고 페인트로 도색하거나 원형의 색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카볼트, 양면테이프, 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3. 특기사항

- 1) 현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추가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 2) 공사일정은 담당자와 상의 후 시공하도록 한다.
- 3) 그 외 공사 문의 사항은 관계자와 협의한다.

4. 철거공사

1) 철거공사

- ①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 착공에 필요한 모든 기계기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대상 광고물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발생방지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③ 공사중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부분(현장 주변 시설물, 광고주의 방해)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사전 조치를 취한 뒤 작업에 임한다.

2) 철거 및 발생품의 처리

- ① 현장에서 철거된 구조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고 보관한다.
- ② 간판 철거 후 손상된 건축물에 대한 복수는 기본적인 청소 및 부분적인 실리콘 보강처리에 한하여 시행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③ 그 밖의 타일, 줄눈, 기타 철거과정에서의 손상에 대한 처리는 도급자가 책임 시공한다.

5. 설치공사

1) 설치공사

- ①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 착공에 필요한 모든 기계기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작업자 및 보행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설치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공사중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부분(현장 주변 시설물, 광고주의 방해)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사전 조치를 취한 뒤 작업에 임한다.
- ④ 작업중 훼손된 시설물 (공공·사적)에 대하여는 작업 완료전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철거및 설치공사는 기존 건물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